

의안번호	2204393
의 퇴 인	소병훈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5.
추 계 번호	24C4150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자활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(연평균 4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자활급여 실태조사(안 제20조의2)	40	40	40	40	40	200	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(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)	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의2(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

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자활급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·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「자활사업이—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 방안 연구」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, 참여자 유형별 정책 목표를 구분하기 위하여 「자활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」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, 해당 연구용역에 소요된 비용(4천만원¹⁾) 단가를 준용 -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추계결과, 매년 자활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(연평균 4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자활급여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자활급여 실태조사(안 제20조의2)	40	40	40	40	40	200	4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1) 실제 3,98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4천만원으로 가정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